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4364    |
| 의 퇴 인 | 이해식 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12.9. |
| 추계번호  | 25B6300    |

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01조(감독 기관)  |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, <u>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</u> 근로감독관을 둠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106조(권한의 위임) |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<u>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</u> 위임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(제2항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1조(감독 기관)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</li> </ul> </li> <li>－ 본문 참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06조(권한의 위임)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(제1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</li> </ul> </li> <li>－ 본문 참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대상(제2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재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|

## 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,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,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, 「근로기준법」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<sup>1)</sup>
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(안 제101조제1항)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(안 제106조제1항) 내용임
  -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경우 근로감독관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으로 근로감독관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채용될 근로감독관의 수 및 직급별 인원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채용인원 및 이들의 직급 등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    - 개정안은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43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

1) 제102조(근로감독관의 권한)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, 기숙사,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(尋問)할 수 있다.  
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.  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(檢診指令書)를 제시하여야 한다.  
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  
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김신애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bo.go.kr |